

1. 개정 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나.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법 제15조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장의2(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 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시험·검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받은 시험·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 사실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효력기간 이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등의 가입 후에는 안전성검사서 발행건별로 관리되어야 하고, 발행건별 책임기간은 안전성검사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

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 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제공제조합이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를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

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8항”을 “법 제4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0조제8항제1호”를 “법 제40조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법 제40조제8항제1호”를 “법 제40조제9항제1호”로,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6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법 제51조제1항제4호 · 제7호 · 제8호”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 · 제4호의2 · 제7호 ·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지원

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

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 · 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4조의5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u>수수료</u> (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u>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u>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u>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u> <u>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u> <u>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u>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u>공급</u>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

확인, 공급자적 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 인신고의 면제확 인	음
5.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 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 또 는 안전확인대 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 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 추가)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 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
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
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
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
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
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
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
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며, 커목에서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커목에서 노목”을 “고목에서 보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		
1. · 2. (생략)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u>법 제15조제3항</u>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6. (생략)		-----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 ②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u>법 제15조제4항</u> -----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
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
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
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
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
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3
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
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
한다.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 법 제15조
제4항 -----

-----.

3. (현행과 같음)

4. -----

-----.

----- 법 제15조제4항

-----.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법
제23조제4항 -----

-----.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시험·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이 2명

<신 설>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

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

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

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

체

5.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

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

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

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 설>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 사실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효력기간 이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등의 가

입 후에는 안전성검사서 발행건
별로 관리되어야 하고, 발행건
별 책임기간은 안전성검사서 발
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
의9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
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
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
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
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
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
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산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 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② ~ ⑤ (생략)

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 조합이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 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

 ----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6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
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
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
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 ----- 제6항-----

-----.

1. ~ 5. (생략)

⑦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⑧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8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생략)

⑨ 제8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

1. ~ 5. (현행과 같음)

⑧ ----- 법 제40조제7항-----

-----.

⑨ ----- 법 제40조제9항-----

-----.

1. 제7항제1호-----
--

2. -----
-----법 제40조제9항제1호-----

3. (현행과 같음)

⑩ 제9항-----

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
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8
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환불·
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
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
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
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
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11. (생략)

12.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
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 · 14. (생략)

15.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
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생략)

-----.

⑪ ----- 법 제40조제9
항제1호-----

----- 안
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
사기관-----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5조제4항 -----

13.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23조제4항 -----

16. (현행과 같음)

17. <u>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8. ~ 24. (생략) 25. <u>법 제51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u> 및 같은 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6. ~ 30. (생략) <u><신 설></u>	17. <u>법 제32조제4항</u>----- ----- ----- <u>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u> <u>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접수</u> <u>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u> <u>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u> <u>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u> <u>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u> 18. ~ 24. (현행과 같음) 25. <u>법 제51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7호·제8호</u> ----- ----- ----- 26. ~ 30. (현행과 같음) <u>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u>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 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 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른 특수·고가 검사설비의 고
시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의5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 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호 및 제4
호의2)-----

-----.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 증기관 또는 안전확 인시험 기관의 지정	가. ~ 나. (생략) 다. (신설)
2. 안전인 증, 안 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약하여 정하는 전기용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
른 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 증기관, 안전확 인시험 기관 또 는 안전 성검사 기관의 지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 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 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 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 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 증, 안 전확인 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 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u>확인신고</u>	<u>품의 시험항목별 금액</u> 나) 생활용품: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 다. (생략) <u>라. (신설)</u>	<u>고 또는 안전성 검사</u>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 다. (현행과 같음) <u>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u>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 4.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생략)	(생략)
5. 안전인 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 안 전인증 대상전 기용품 또는 안전확 인대상 전기용 품의 안전검 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u>전기용품 공장심사</u>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u>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u> 2) <u>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u> 가) 모델수 5개 이하: <u>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u> 나) 모델수 6개 이상: <u>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u> 3) <u>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u> 가) 모델수 5개 이하: <u>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u> 나) 모델수 6개 이상: <u>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u> 4) (생략) 나. (생략)

비고

-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현행과 같음)	
5. 안전인 증대상 제품의 정기검 사, 안 전인증 대상전 기용품 또는 안 전확인 대상전 기용품 의 안전 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u>공장심사</u>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u>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 추가)</u>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비고

-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

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

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아. (신설)

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아. 법 제15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1) ~ 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자. ~ 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법 제15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 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1) ~ 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거.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너. ~ 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너. ~ 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커. 제34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0의2			
(신설)		(신설)	(신설)			150	170	200
(신설)		(신설)	(신설)			130	150	180
(신설)		(신설)	(신설)			100	120	15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신설)	(신설)				터. 제34조의4	법 제51조제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항제20의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	2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00명 미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신설)	(신설)				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터. 제34조의4	항제20의4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신설)	(신설)				허. 제34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자본제공제 조합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	법 제51조제1항제4의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u>고. ~ 보.</u> (생 략)	(생략)	(생 략)	(생 략)	(생 략)	<u>고. ~ 보.</u>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 음)	(현행 과 같 음)	(현행 과 같 음)	(현행 과 같 음)
-------------------------	------	----------	----------	----------	-----------------------------	--------------	------------------	------------------	------------------